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주유소’ 를 운영하는 자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한 곳에 불과한 점, 아직까지 피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국제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 판매 마진율이 계속 감소하여 영업을 유지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경감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바 관계규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7조 [별표 2]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인천남동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 ○○.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5) 위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 ○○. ○○.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에 따라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8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던 점, 피해를 입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한 곳에 불과한 점, 아직까지 피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5)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 ○○. ○○.부터 같은 해 ○○. ○○.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합계 12,190리터 상당의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명백하고 청구인의 위반횟수, 위반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